

산업보건 주요뉴스

노사정,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원년 선포

- 안전한 직장, 건강한 근로자를 위한 자율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등

2008. 9. 10(수) 11:30분 COEX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노·사단체, 언론계 및 재해예방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문화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이는 그동안 산업재해율이 0.7%대에 정체되어 왔고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다양화 등으로 법규이행 지도감독 위주의 기존의 방법으로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안전보건문화운동을 통해 노사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노사가 사업장내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재해예방활동이 생활화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선언서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관리 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을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의 준수를 생활화하고, 언론계는 대국민 안전보건의식 제고에 역점을 두어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추진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보건문화 증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강조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정신을 살려 안전문화 활동이 문화로 정착되는 안전문화 성숙기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원년 선포를 계기로 사업장내 안전관리 기법의 보급 및 확산, 사회 주도층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증진 캠페인 전개, 국민이 공감하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포름알데히드·노말핵산 등 직업병 위험물질 특별관리

- 2009년부터 허용기준 초과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동부는 발암성물질 등 인체에 특히 유해한 직업병 위험물질에 대하여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 시행을 통하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용기준”은 규정된 노출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 하고 있는 “노출기준”과는 달리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노동부는 허용기준을 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질 종류와 그 허용 기준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8. 9. 18.(목) 공포하고 내년 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사업주는 허용기준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노출농도가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

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허용기준 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만으로는 직업병 위험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은 총 13종으로,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등 6종과 인체장해물질인 납과 노말핵산 등 7종이다.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및 특성

| 연번 | 유해인자명 | 유해인자의 특성 | 직업병 사례 |
|----|-----------------------|----------------------------|--------------------------------|
| 1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납중독(중추신경계 장애) | 1983년 납중독 61명 |
| 2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폐암, 비강암 | 2000년 니켈중독 전신질환 |
| 3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간·신장·심장독성, 중추 신경계 장애 | 2006년 1명 사망/2007년 1명 사망, 3명 중독 |
| 4 | 벤젠 | 백혈병(중추신경계 장애) | 직업병 17건(1992-2004) |
| 5 | 2-브로모프로판 | 생식기능 장애 | 1995. 8. 28명 생식기능저해(무월경, 정자감소) |
| 6 | 석면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 2000~2007. 6. 직업병자 54명(사망 45명) |
| 7 | 6가크롬 화합물 | 폐암 | 직업병 14건(1992-2004) |
| 8 | 이황화탄소 | 중추·말초신경계 장애, 관상동맥질환, 간질환 등 | 원진레이온 사건(100여명 직업병 발생) |
| 9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폐암 | 매년 직업병유소건자 5~10명 발생 |
| 10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DI) | 직업성천식 | TDI 직업병 36건(1992-2004) |
| 11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중추신경계 장애 | 2006년 4명 사망, 2명 중독/2007년 2명 중독 |
| 12 | 포름알데히드 | 비강암(호흡기계 장애) | 직업병 3명(2000-2004) |
| 13 | 노말핵산 | 말초신경 장애 | 2005. 1 외국인근로자 8명 하반신 마비 |

“노사화합선언, 노사관계·고용에 긍정적 효과”

-노사화합선언 사업장, 적은 근로손실일수·신속한 임금교섭·낮은 이직률·긴 근속기간의 특징 가져-

9.22일 기준 노사화합선언(1,585건)이 전년 동기(51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가 산업현장에 확산되는 가운데, 노사화합선언이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2년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노사화합선언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적은 근로손실 일수, 신속한 임금교섭 타결, 낮은 이직률 및 장기 근속기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노사화합 미선언 사업장의 7% 수준

조사 결과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2007년에 '0일', 2008년에는 미선언 사업장의 7%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8년 노사화합선언 후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곳은 충남의 'S산업' 1개소에 불과하여, 노사화합선언이 노사분규 발생을 줄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개소는 지난 8월말 장기 분규를 타결한 '뉴코아'로 2010년까지 무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노사 간 신뢰형성으로 불필요한 교섭비용 감축

2007, 2008년 모두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 진척률은 미선언 사업장에 비

해 14%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 진척률은 전체 사업장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를 통해 임금교섭 타결 정도 및 교섭비용을 가늠해볼 수 있다.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 진척률이 월등히 높은 것은 노사화합선언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기간 단축, 불필요한 교섭비용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 안정 추세

2007년에는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5.2%로 전체 사업장(4.7%) 및 미선언 사업장(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사화합선언으로 인한 교섭비용 감소분이 임금인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8년에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4.6%)은 전체 사업장(5.2%)보다 0.6%p, 미선언 사업장(5.5%)보다 0.9%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는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근로자가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경우 평소 투명한 정보 공개, 정기적 경영 설명회 등으로 노사가 회사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낮은 이직률과 긴 근속기간으로 고용안정에 효과

2008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이직률(17.3%)은 전체 사업장(28.4%), 미선언 사업장(28.8%) 비해 10%p 이상 낮고, 평균 근속기간(1,892일)도 500일 이상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화합선언 사업장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 및 주인의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낮은 이직률과 장기 근속기간은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근로자 숙련도·생산성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노사화합선언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다.

● 노사화합선언은 노사 간 신뢰 축적의 계기

이와 같이, 노사화합선언은 적은 근로손실일수, 신속한 임금교섭 타결, 낮은 이직률 및 장기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쳐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재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사화합선언은 ‘신뢰’라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뢰적자’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노사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노동부, 노사협력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실천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장·단체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사화합선언을 촉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내재화 될 수 있도록,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을 2008년 35억원(68개소 지원)에서 2009년 50억원(100개소)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이란 생산성 향상 등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비용을 사업장 4천만원, 지역·업종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사협력 정책 구현을 위해 16개 시도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기반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화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노사상생협력 우수도시’ 지정 및 포상금 지급(2008년 10억원→2009년 18억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노사상생·협력이 차근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독려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근로자의 날 표창 등을 수여하여 노사화합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